

제 정 : 2015. 05. 06.
1 차 개정 : 2018. 08. 06.
2 차 개정 : 2023. 06. 26.



監査委員會 運營規程

2023. 6. 26.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으로 총칭) 과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8.6 개정)

제2조 (적용범위)

관계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능)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제2장 구 성

제4조 (구성)

- ① 감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중 1인 이상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사외이사인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의 수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

- ①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외이사 중에서 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선정한다.
-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중에서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선출한다.

제6조 (감사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자의 출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케하여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7조 (종류)

감사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소집권자)

-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각 위원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감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소집 절차)

- ① 감사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의 장소, 일자 및 그 의안을 정하고 7일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018.8.6 개정)
- ② 감사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결의방법)

- ①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전화 및 화상회의, 기타 유사한 통신장비를 사용하여 감사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은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외부감사인인 선임 및 변경 · 해임을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8.8.6 개정)

제11조 (이사회와의 관계)

- ① 감사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주요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사회로부터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임원(이하 “경영진”으로 총칭)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 하여야 한다. (2018.8.6 신설)

제12조 (권한)

- ①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권- 경영진의 직무 집행이 법과 정관에 따른 적법한 것인지, 또한 현저하게 부당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감사 (2018.8.6 개정)
- ②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재산 조사권
- 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
- ③ 이사보고의 수령권
-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시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
- ④ 자회사의 조사권
-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
- 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留止청구권
-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留止할 것을 청구
- ⑥ 각종 訴의 대표권
-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
 -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
- ⑦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2018.8.6 개정)
- ⑧ 외부전문가의 조력 요청권 (2018.8.6 개정)
-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요청
- ⑨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해임 (2018.8.6 개정)
- ⑩ 내부감사업무부서 책임자의 임면동의권 (2023.6.26 개정)
- ⑪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 ⑫ 기타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으로서 이사회가 수시로 위임한 사항

제13조 (의무)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 및 비회의 활동과 관련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2018.8.6 신설)

1. 경영진의 업무감사 및 재무보고 관련사항 (2018.8.6 신설)

- 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018.8.6 개정)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자료에 기초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에 대한 조사 보고 의무 (2018.8.6 개정)

-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에 대한 조사 보고 의무 (2018.8.6 개정)

- 경영진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경영진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한 조건으로 체결된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④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2018.8.6 개정 및 항목 변경)

- 정기총회회의일의 6주간 전에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받은 후, 이사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 예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 영업상 비밀 누설방지의 의무 (2018.8.6 항목 변경)

⑥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사항을 수행할 의무 (2018.8.6 항목 변경)

2.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포함한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제도 평가 관련 (2018.8.6 신설)

- ①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 자산의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의 존재여부 및 동 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해야 하고, 내부조직단위간의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 이를 바탕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018.8.6 신설)
- ②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하게 하여야 한다. (2018.8.6 신설)
- ③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조직이 부정을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는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감독하고, 부정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윤리·준법경영 현황을 평가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2018.8.6 신설)

3. 외부감사인 관련하여 (2018.8.6 신설)

- ①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전 외부감사인 후보자로부터 외부감사 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외부감사인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 예상 감사시간, 징계 여부 등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018.8.6 신설)

- ②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외부 감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하고, 최소한 분기에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 만나서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 결과를 내부감사 업무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2018.8.6 신설)
- ③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결과를 보고받고, 외부 감사인의 권고사항과 이에 대한 경영진의 입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사의 회계 처리시 적용된 각종 평가 및 추정과 관련된 가정과 관련 기초자료 등을 외부감사인 으로부터 보고받아 검증 하고, 회계처리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2018.8.6 신설)

4. 주주, 채권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2018.8.6 신설)

회사는 주주, 채권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관련 내역을 적절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의사록)

감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위원과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2018.8.6 개정)

제15조 (내부감사업무)

- ① 회사는 내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한다. (2018.8.6 신설)
- ② 경영진은 감사위원회 지원업무에 관한 한 최대한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2018.8.6 신설)

제16조 (사무국)

- ① 감사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두고 재경팀장이 이에 임한다. (2018.8.6 개정 및 조 변경)
- ② 사무국은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회의소집절차의 이행, 회의 의사록 초안작성 등 감사위원회의 사무전반을 관리한다. (2018.8.6 개정 및 조 변경)

제17조 (평가, 교육 및 보수)

-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활동내용에 관하여 매년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평가방법은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감사위원간의 협의에 따르며 3년에 한번씩 외부전문가에 의뢰할 것을 정할 수 있다. (2018.8.6 신설)
- ② 이사회는 감사위원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의 업무내용과 역할 및 책임과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진 및 경영전략 등 감사위원으로서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내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2018.8.6 신설)

- ③ 감사위원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의 결의에 따라서 위임된 이사보수 한도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사회는 보수의 산정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2018.8.6 신설)

제18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2018.8.6 조 변경)

부칙 (2015.5.6)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6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칙 (2018.8.6)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26)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